

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4. 4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신용섭 상임위원(국외 출장중)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'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에 관한 건 - (2012-19(서)-066)

- 제11차 위원회(12. 3. 6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찬성위원 : 위원장, 부위원장, 김충식 위원 (3인)

※ 반대위원 : 양문석 위원 (1인)

○ 주요 내용

①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등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

- (허가) 허가심사요건, 허가신청서류,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등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
- (허가취소 등) 거짓으로 허가 받은 경우 등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규정

②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규정

- (특수관계자) 배우자, 친·인척, 임원, 계열사 등 본인이 또는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(30/100이상 출자, 대표자 선임 등)
- (기업집단)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(방송법 준용)

③ 금지행위 세부유형 규정

- (광고판매대행자)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, 거래거절, 차별취급,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 규정
- (방송사업자)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경영간섭, 거래거절, 차별취급 등의 세부 유형 규정

④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규정

- (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탁수수료) 방송광고판매액의 13~16%로 규정
※ 단, 이동멀티미디어방송(DMB)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13~18%로 규정
- (지상파방송광고의 대행수수료) 수탁수수료의 70~86%로 규정
※ 단, 이동멀티미디어방송(DMB)광고의 대행수수료는 85~95%로 규정

⑤ 과징금·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
-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준 과징금·과태료를 정하고, 위반기간·주도여부 등을 고려 가중·감경 기준 규정

○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

-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허가심사요건 구체화, 재허가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등 일부 자구를 수정
- 코바코,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수료 범위 조정, 수수료 관련 고시위임 근거 추가 등 일부 자구를 수정

○ 향후 일정

-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: '12년 4월 중순
- 법제처 심사 : '12년 5월 초순
- 차관회의, 국무회의 : '12년 5월 중순
- 공포 및 시행 : '12년 5월 23일